

함께 만드는 미래
NEXT>경기

2014 계약심사 사례집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목 차

I. 계약심사 일반

- 1. 계약심사제도 운영 개요 7
- 2. 2014년도 계약심사 현황 8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 1. 토목 분야 19
- 2. 건축 분야 57
- 3. 설비 분야 79
- 4. 용역(일반·학술) 분야 101
- 5. 물품·전산 분야 117

Ⅲ. 시·군 계약심사 사례

| | |
|--------------|-----|
| 1. 용인시 | 129 |
| 2. 평택시 | 132 |
| 3. 안성시 | 134 |

Ⅳ. 참고자료

| | |
|-----------------------------|-----|
|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141 |
| 2. 계약심사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 155 |

1 계약심사제도 운영 개요

개 념

-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 제거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심사 운영요령)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 대상기관 : 도, 시·군, 공공기관
 - ※ 시·군 :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함(다만, 시·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음)
- 대상사업 및 범위

| 구 분 | 대 상 범 위 |
|------|--|
|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
|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학술연구·일반용역 1억원 이상) |
|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 및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

2 2014년도 계약심사 현황

계약심사 운영 성과

○ (예산 절감) 806억원 절감

- 도, 시군, 공공기관 발주사업 1,727건 1조 1,829억원 심사

○ (제도 정착) 조정률 감소 등 제도의 안정적인 자리매김

- 발주 / 사업부서의 원가계산 자료 축적, 단가수량 산정의 반복적인 오류 감소로 적정설계 비율 높아짐

※ 조정률 : (12년) 10.6% → (13년) 7.9% → (14년) 6.8%

○ (전문성 강화) 심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친절도 향상

- 심사기법, 원가산정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확대 운영

- 계약심사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전문 만·관 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친절도 : (12년) 60% → (13년) 75% → (14년) 77%
/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

○ (시·군 지원) 계약심사 선도기관으로서의 행정의 적극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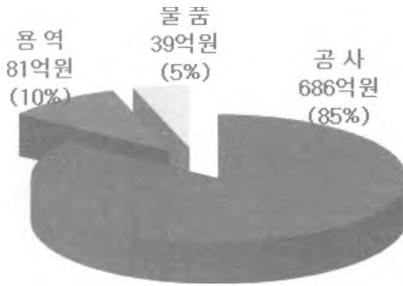
- 시·군 자체재원사업에 대한 도 심사 확대 운영으로 시·군의 계약 심사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 해소

※ 시·군 자체재원사업 심사 : (13년) 98건 1,109억원 → (14년) 163건 1,571억원 /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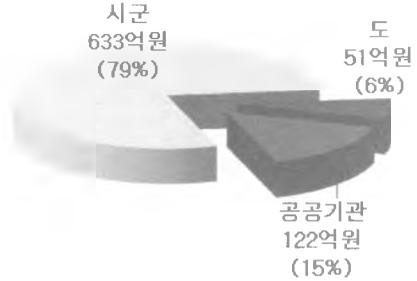
⇒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원 마련

•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1조 2,393억원 절감

심사 결과(실적)



< 분야별 >



< 기관별 >

○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 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727 | 11,829 | 11,023 | 806 | 6.8 |
| 도 | 370 | 1,380 | 1,329 | 51 | 3.7 |
| 공공기관 | 236 | 2,083 | 1,961 | 122 | 5.9 |
| 시·군 | 1,121 | 8,366 | 7,733 | 633 | 7.6 |

○ 분야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 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727 | 11,829 | 11,023 | 806 | 6.8 |
| 공사 | 829 | 8,727 | 8,041 | 686 | 7.9 |
| 용역 | 273 | 2,190 | 2,109 | 81 | 3.7 |
| 물품구매·제조 | 625 | 912 | 873 | 39 | 4.3 |

※ 예산절감 효과는 공사분야가 686억원으로 전체 조정액의 85% 차지

붙임 1

계약심사 조정액 TOP 10

(단위 : 백만원)

| 연도 | 의뢰기관 | 건명 | 대상액 | 심사액 | 조정액 | 주요내용 |
|----|-----------------------|-----------------------------|--------|--------|-------|---|
| 1 | 남양주시 (10. 22) |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 5,416 | 4,340 | 1,276 | 터파기(기계70%, 인력30% → 기계90%, 인력 10%)조정, 되메우기(기계70%, 인력30% → 기계100%) 조정, PVC이중벽관 품 조정, 하수관 준설 수량 조정 등 |
| 2 | 양주시 (8. 28) |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토목) | 8,467 | 7,366 | 1,101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기준에 따른 동상방지층 생략 비탈면 천공 및 그라우팅 적정품 조정(견적→표준품셈) |
| 3 | 경기도시 공사 (8. 26) | 화성동탄2 물순환시스템 조성 공사(토목, 조경) | 15,888 | 14,961 | 927 | 토공작업시 발생된 잔토량 공원 조성시 유용, 환경보전비 중복계상 제외 |
| 4 | 경기도시 공사 (8. 25)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 산업단지 조경공사(조경) | 22,251 | 21,377 | 874 | 목재데크 설치 품 조정(잡철물 제작설치→설치), 안전관리비 오류 조정 |
| 5 | 경기도시 공사 (9. 17)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워터프론트 전기공사 | 3,386 | 2,569 | 817 | 관로굴착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조정(개당 0.84㎡→0.3㎡) 차도 이외의 부분 기준 적용하여 물량 산출 |
| 6 | 경기도시 공사 (9. 4) |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3-2공구 조경공사(토목) | 18,193 | 17,386 | 807 | 자연석 쌓기품 조정(조경석 쌓기→전석 쌓기), 얇은 벽 설치 품 조정(잡철물제작설치→설치) |
| 7 | 화성시 (2. 17) |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토목) | 5,963 | 5,157 | 806 | 호안공 호안블럭 설치품 조정 (견적단가→표준품셈) 환경보전비 중복계상 제외 |
| 8 | 연천군 (2. 27) | 연천 상,무등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토목) | 5,048 | 4,345 | 703 | 토공 터파기 단가 조정 및 포장공 아스팔트 깨기 단가 조정 |
| 9 | 파주시 (3. 21) | 분수천 주변도로 개설공사 (토목) | 3,478 | 2,802 | 676 | 토공 순성토 운반차량 조정(덤프15톤→24톤) 콘크리트포장 깨기 단가 조정 |
| 10 | 여주시 (12.18) | 금당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 3,337 | 2,668 | 669 | sheet pile 항타 품 조정, 풍화암 천공 및 간이 조립식 흙막이 품 조정 등 |

계약심사 조정률 TOP 10

(단위 : 백만원, %)

| 번 | 의뢰기관 | 건 명 | 대상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주요내용 |
|----|-----------------------|---|-----|-----|-----|------|--|
| 1 | 양평군 (7. 22) | 창대, 석장 배수펌프장 제진기 개선공사(기계) | 96 | 41 | 55 | 57.7 | 기존 제진기 설비 철거 품 조정 및 콘베이어 철거 수량 조정 |
| 2 | 시흥시 (2. 28) | (구)한국가스안전공사1단계 개방시설(체육관)리모델링 공사(기계) | 61 | 33 | 28 | 45.7 | 2014년 개정 표준 품셈 적용 공량 조정 및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 3 | 수원시 (12. 8) | 물 재이용(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건축) | 199 | 110 | 89 | 44.9 | 천장틀 및 AL 몰딩 교체공사 조정 등 8종 |
| 4 | 동두천시 (1. 23) | 중앙3빛물펌프장지구 용량 증설 관급 CCTV설비(통신) | 29 | 16 | 13 | 43.9 | 카메라, 서지 보호기 등 주야자재단가 조정 |
| 5 | 경기도시 공사 (8. 26) | 화성동탄2 물순환시스템 조성공사(건축) | 639 | 361 | 278 | 43.6 | 자재단가 조정, 방수공사 증복물량 삭제, 미장공사 개정 품셈 적용 등 |
| 6 | 평택시 (9. 12) | 이충레포츠 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토목) | 63 | 36 | 27 | 43.5 | 인조잔디 견기, 하수관 준설품 조정(견적→품셈) |
| 7 | 과천시 (6. 16) | 가로등 절전기 설치공사 (전기) | 83 | 49 | 34 | 40.1 | 절전기 설치비 산출기준 변경(전압조정기→안정기) |
| 8 | 여주시 (3. 28) | 흥천면 수도시설 설치 공사(전기) | 217 | 137 | 80 | 36.8 | 전선관(매입) 자재변경(강제전선관 →경질비닐전선관) |
| 9 | 이천시 (5. 29) | 서희역사관 신축공사(기계) | 27 | 18 | 9 | 34.6 | 주요자재 단가조정 및 이종 산출 순공사비 삭감 |
| 10 | 안성시 (4. 22) | 일죽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건축) | 314 | 206 | 108 | 34.5 | 체육관 충격 방지재 수량 및 일위대가 조정 등 |

붙임 2

연도별, 분야별 계약심사 실적

1 연도별

○ 2014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 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727 | 11,829 | 11,023 | 806 | 6.8 |
| 도 | 370 | 1,380 | 1,329 | 51 | 3.7 |
| 공공기관 | 236 | 2,083 | 1,961 | 122 | 5.9 |
| 시·군 | 1,121 | 8,366 | 7,733 | 633 | 7.6 |

○ 2013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 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886 | 17,730 | 16,335 | 1,395 | 7.9 |
| 도 | 402 | 2,738 | 2,561 | 177 | 6.4 |
| 공공기관 | 216 | 1,341 | 1,269 | 72 | 5.4 |
| 시·군 | 1,268 | 13,651 | 12,505 | 1,146 | 8.4 |

○ 2012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 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869 | 15,474 | 13,827 | 1,647 | 10.6 |
| 도 | 372 | 1,881 | 1,705 | 176 | 9.3 |
| 공공기관 | 186 | 1,876 | 1,755 | 121 | 5.5 |
| 시·군 | 1,311 | 11,717 | 10,367 | 1,350 | 11.5 |

○ 2011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 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2,149 | 19,153 | 17,380 | 1,773 | 9.3 |
| 도 | 431 | 3,401 | 3,094 | 307 | 9.0 |
| 공공기관 | 201 | 2,622 | 2,424 | 198 | 7.6 |
| 시·군 | 1,517 | 13,130 | 11,862 | 1,268 | 9.7 |

2 분야별

○ 2014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727 | 11829 | 11023 | 806 | 6.8 |
| 공 사 (설계변경) | 829 | 8,727 | 8,041 | 686 | 7.9 |
| | (6) | (264) | (254) | (10) | (3.8) |
| 용 역 | 273 | 2,190 | 2,109 | 81 | 3.7 |
| 물품구매·제조 | 625 | 912 | 873 | 39 | 4.3 |

○ 2013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886 | 17,730 | 16,335 | 1,395 | 7.9 |
| 공 사 (설계변경) | 869 | 13,713 | 12,492 | 1,221 | 8.9 |
| | (9) | (141) | (129) | (12) | (8.7) |
| 용 역 | 321 | 2,697 | 2,600 | 97 | 3.6 |
| 물품구매·제조 | 696 | 1,320 | 1,243 | 77 | 5.9 |

○ 2012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1,869 | 15,474 | 13,827 | 1,647 | 10.6 |
| 공 사 (설계변경) | 967 | 12,105 | 10,689 | 1,416 | 11.7 |
| | (12) | (120) | (112) | (8) | (6.7) |
| 용 역 | 273 | 2,177 | 2,037 | 140 | 6.4 |
| 물품구매·제조 | 629 | 1,192 | 1,101 | 91 | 7.2 |

○ 2011년

(단위 : 건, 억원, %)

| 구 분 | 심 사 결 과 | | | | |
|---------------|---------|--------|--------|-------|-------|
| | 건수 | 심사요청액 | 심사평가액 | 조정액 | 조정률 |
| 총 계 | 2,149 | 19,153 | 17,380 | 1,773 | 9.3 |
| 공 사 (설계변경) | 1,126 | 15,450 | 13,937 | 1,513 | 9.8 |
| | (32) | (751) | (713) | (38) | (4.9) |
| 용 역 | 391 | 2,632 | 2,448 | 184 | 7.0 |
| 물품구매·제조 | 632 | 1,071 | 995 | 76 | 7.0 |



1. 토목 분야



1 00~00급수구역 확장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2,716백만원(도급액 1,561 관급 1,155)
- 규모 : 상수관로 L=12km, 아스콘포장 25,321m²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561 | 1,423 | 138 | 8.84 |

주요 심사내용

○ 포장공 기층 포설 및 다짐품 조정 (2회 → 1회)

- 기존 2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상수관로 매설구간에 안전한 차량교행을 위해 기존 포장면에 맞추어 가포장(기층, T=15cm)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가포장 부분 표층(T=5cm)은 절삭 후 포장하므로 기층 포설 및 다짐품을 2회 → 1회로 조정

※ 가포장 기층 포설 및 다짐 : 80,300천원 → 40,200천원(△ 40,100천원)



관로 매설 후 아스팔트 복구 포장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설계도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적용

2

OO지구 빗물펌프장 조성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29,534백만원(도금액 13,095 관급 16,439)
- 규모 : 펌프실동 및 우수지 1개소, 수목식재 3,008주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3,095 | 12,091 | 1,004 | 7.67 |

주요 심사내용

○ 포장공 보도블록포장 골재 포설 및 다짐품 조정

— 보도블록 포장품 적용된 실적공사비에 골재, 포설, 운반, 다짐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계상된 골재 포설 및 다짐 비용 제외

※ 블록포장 골재 포설 및 다짐 : 55,388원/m³ → 54,928원/m³



보도블럭 시공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심사 착안 사항

- 실적공사비 적용 적정 유무

3

00~00간 도로확포장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11,312백만원(도급액 7,549 관급 3,763)
- 규모 : 도로확포장공사(L=3.72km, B=12m)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7,549 | 6,953 | 596 | 7.9 |

주요 심사내용

- 발파암 현장 유용 (발파암 사토처리 → 현장 유용)
 - 현장 내 발생된 발파암을 사토 처리(5km)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장 인근 골재처리장에서 재생처리 후 현장 보조기층재 등으로 유용
 - ※ 발파암 현장 유용 : 245,132천원 → 158,080천원(△ 87,052천원)
- 가드레일 및 보행자용 휨스와 방음벽 설치 중복구간 조정
 - 도로와 인접하여 주택, 축사 등이 있어 계획한 방음벽 설치구간과 중복 계상된 노측용 가드레일 및 휨스 설치 물량 제외
 - ※ 가드레일 및 휨스설치 : 92,583천원 → 73,512천원(△ 19,071천원)



현장 발파

법규 및 적용기준

-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심사 착안 사항

- 현장 주변 여건을 고려한 발파암 유용
- 설계도면 및 현장을 확인하여 중복 반영된 공종 제외

4

OO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1,207백만원(도급액 949 관급 258)
- 규모 : 도로개설(B=6.0m, L=491m)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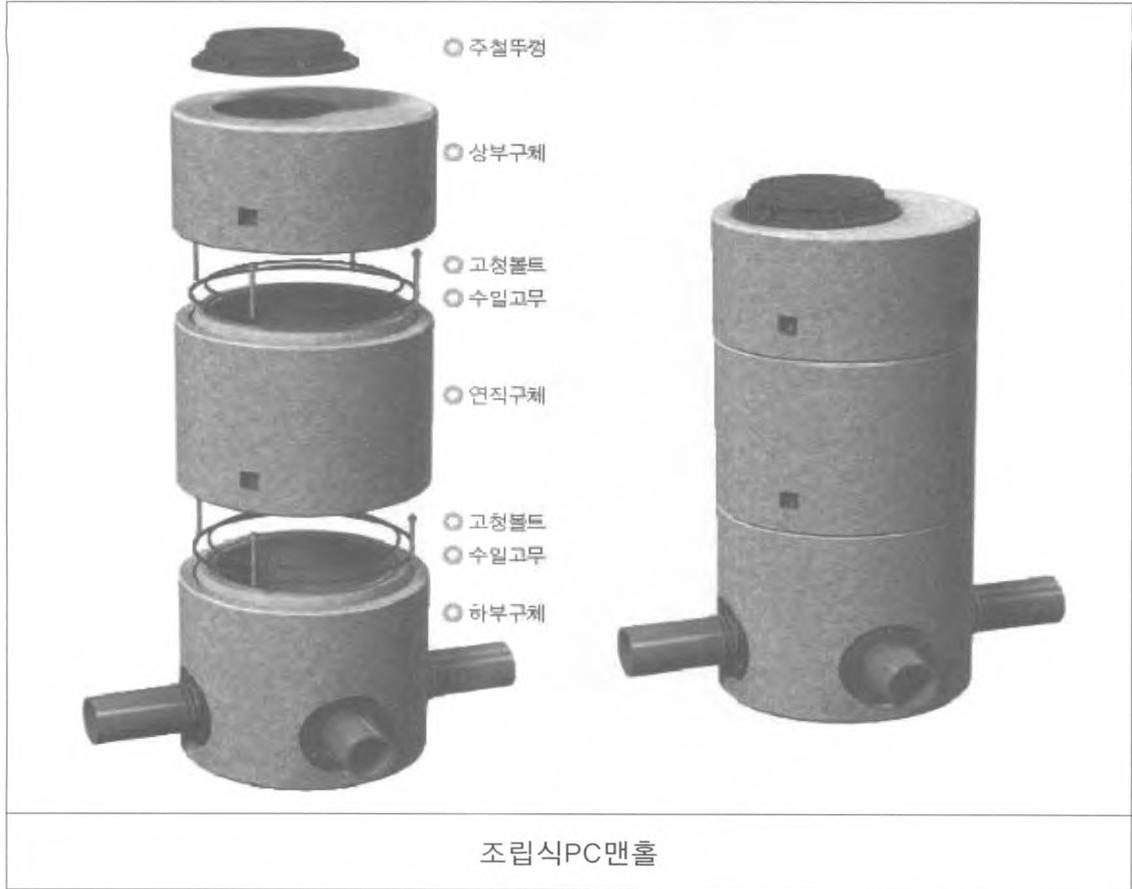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949 | 689 | 260 | 27.4 |

주요 심사내용

- 배수공 맨홀 설치 공법 변경 (현장타설 → 조립식PC맨홀)
 - 맨홀 현장타설은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길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경제적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립식PC맨홀(기성품)로 변경
 - ※ 배수공 : 283,910천원 → 216,765천원(△ 67,145천원)
- 상수도공 공법 변경 (조립식간이흙막이 → 오픈컷)
 - 간이흙막이는 터파기 깊이가 깊은 구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공법이나, 해당 현장은 터파기 깊이가 1.2m로 간이흙막이가 불필요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오픈컷 공법으로 변경
 - ※ 상수도공 : 61,060천원 → 22,102천원(△ 38,958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현장 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 공법 적용

5

00천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6,634백만원(도급액 5,416 관급 1,218)
- 규모 : 오수관로 L=5.9km, 배수설비 733가구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5,416 | 4,140 | 1,276 | 23.56 |

주요 심사내용

○ 관로공 터파기 및 가시설 공법 조정

- '인력100%' 로 반영된 터파기·되메우기 품을 현장 여건 확인 후 '인력 10%+기계90%' 로 조정하고, 작업공간 협소 할증을 제외
- 하천 내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H-파일로 가시설을 계획하였으나, 현장 확인 후 터파기 깊이를 고려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효율적인 조립식 간이흙막이로 변경

※ 관로공 하천구간 : 1,579,894 → 1,008,187천원(△ 571,707천원)

○ 설계에 누락된 현장사무소 반영

- 당해 공사에 필요하나 설계에 누락된 현장사무소를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성격, 재료 수급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로 설치 반영

※ 현장사무소 : 0 → 2,082천원



H-파일 흙막이



조립식 간이흙막이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설계에 반영된 공법, 작업여건에 따른 할증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6

OO도로 확포장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3,503백만원(도급액 1,650 관급 1,853)
- 규모 : 도로개설(L=1.16km, B=12~25m)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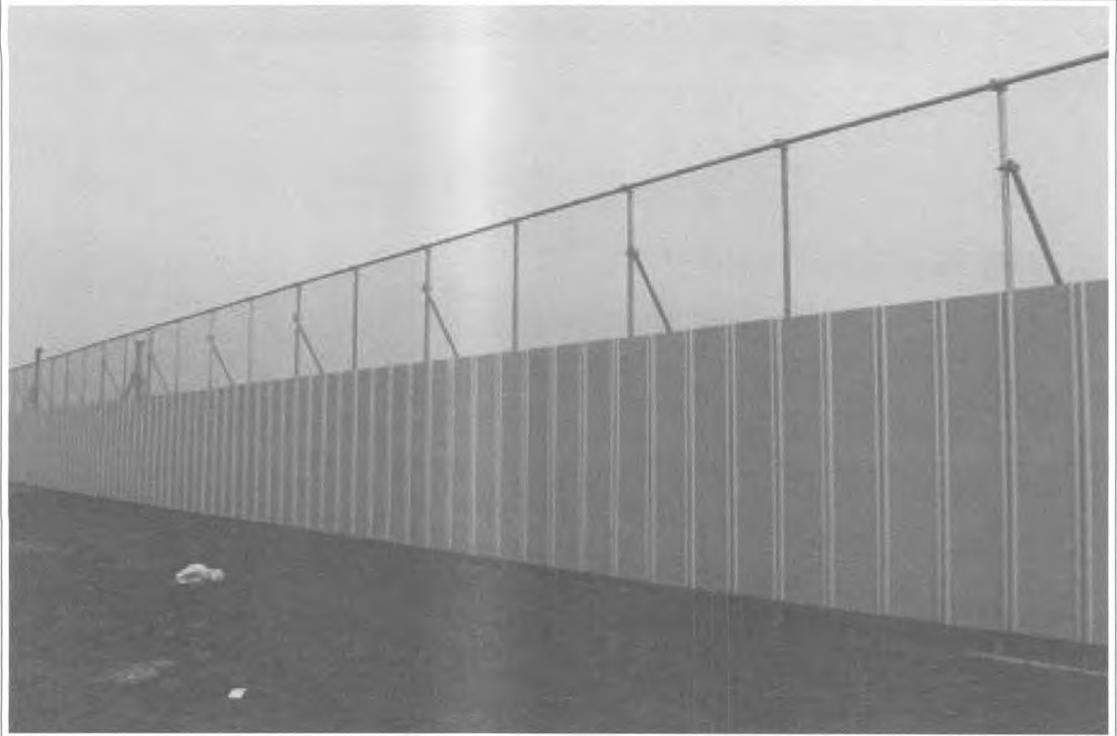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650 | 1,458 | 192 | 11.64 |

주요 심사내용

- 가설방음벽 손을 적용
 - 관급자재(현장설치도)로 반영한 가설방음벽은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건설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가설자재 구입·시공을 손을 적용·시공하는 것으로 변경



가설방음벽(EGI웬스)

법규 및 적용기준

-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공종 성격에 따른 적정 설계 여부

7

00천 제방정비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 업 비 : 2,384백만원(도급액 1,479 관급 904)
- 규 모 : 호안설치 6,320㎡, 교량공 2개소 등
- 기 간 : 2014년 3월 ~ 12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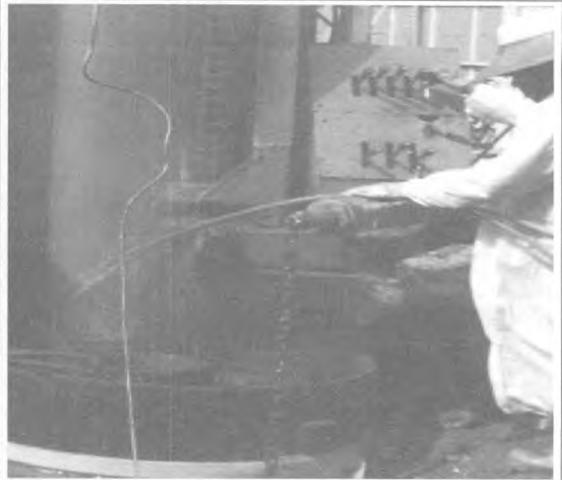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479 | 1,227 | 252 | 17.04 |

주요 심사내용

- 호안블럭 설치공법 변경 (인력설치 → 기계설치)
 - 하천공사 호안(하천법면) 블럭 설치를 인력시공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기계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설치공법 변경
 - ※ 호안블럭설치 : 133,582천원 → 61,148천원(△ 74,434천원)
- 교량공의 I형 거더제작, 기초 암 천공품 품셈 적용
 - 견적단가로 설계 반영한 I형 거더 제작품을 「표준품셈(17-1)」 용접교 제작으로 적용
 - 작업능력을 연암으로 적용한 암 천공 품을 도면과 지질주상도 확인 후 풍화암으로 조정 (천공 작업능력 : 연암 → 풍화암)
 - ※ 교량공 : 467,073천원 → 402,740천원(△ 64,333천원)



호안블럭 설치



암 천공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작업여건에 적합한 공법 적용
- 설계도면, 용역보고서, 지질주상도 확인 후 해당 토사 및 암에 적합한 작업능력 적용

8

00~00도로 확포장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15,082백만원(도급액8,467 관급 6,615)
- 규모 : 도로신설공사 L=2.47km, B=24m(4차로)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8,467 | 7,366 | 1,101 | 13 |

주요 심사내용

○ 포장공 일부구간 동상방지층 생략

- 도로 확포장 전 구간에 대하여 동상방지층이 반영되어 있으나,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2.8월)」에 따라 흙 쌓기 높이가 노상 최종면을 기준으로 2m 이상인 구간이 연속될 경우 동상방지층이 불필요하므로 생략

※ 포장공 : 500,000천원 → 377,294천원(△ 122,706천원)

○ 비탈면 천공 및 그라우팅 등 표준품셈 적용

- 비탈면 천공 품을 개정된 「표준품셈(2014년 8월)」에 따라 조정
- 견적단가로 반영한 비탈면 보호공은 표준품셈으로 적용

※ 비탈면안전공 : 1,233,706천원 → 1,071,637천원(△ 1,266,069천원)



동상방지층



비탈면 천공

법규 및 적용기준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관련 지침에 따른 동상방지층 필요 유무
- 견적단가로 설계된 공정의 품셈 및 관련기준 적용

9

OO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5,762백만원(도급액 3,791 관급 1,971)
- 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Q=170m³/일, 오수관로 8.367km
- 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10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791 | 3,054 | 737 | 19.45 |

주요 심사내용

○ 가시설공(Sheet Pile) 단가산출 오류 조정

- Sheet Pile 항타 단가 산정 시 항타길이가 15m, N값(표준관입시험) 10으로 적용되어 본당 시공시간이 48.98분이었으나, 도면 및 용역보고서 확인결과 항타길이 2.4m, N값 7로 본당 시공시간을 15.54분으로 조정 (본당 시공시간 48.98분 → 15.54분)

※ 가시설공(sheet pile) : 312,738천원 → 141,171천원(△ 171,567천원)

○ 관로공 조립식 간이흙막이 단가 조정

- 현장 확인결과 작업여건이 양호하여 굴착소요시간, 판넬 압입시간, 뽑는 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조정

※ 조립식간이흙막이 : 359,812천원 → 247,348천원(△ 112,464천원)



시트파일 시공



조립식 간이흙막이

법규 및 적용기준

-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설계도면과 산출내역과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적정설계 여부 검토
- 현장여건을 고려한 조립식간이흙막이 시공시간 조정 등 경제성 검토

10

00천 하수관로 정비사업(토목)

사업개요

- 사 업 비 : 2,969백만원(도급액 2,204 관급 765)
- 규 모 : 오수관로 신설 L=5.65km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204 | 1,955 | 249 | 11.30 |

주요 심사내용

○ 교통신호수 배치일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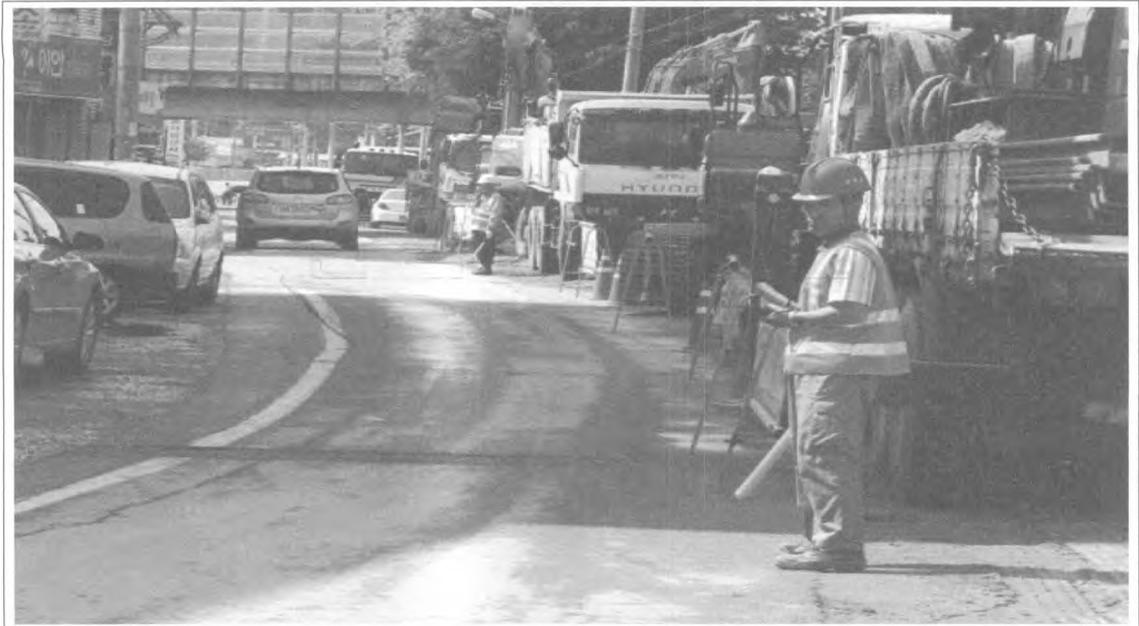
- 전체 공사기간 대비 교통신호수 배치일수가 과다하게 적용되어, 실제 교통신호수가 필요한 지방도 관 매설 구간을 대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필요 일수만 반영 (208일 → 132일)

※ 교통신호수 : 36,061천원 → 22,885천원(△ 13,176천원)

○ 가시설공 중복 공정 제외

- 2014년 개정된 흙막이 가시설 품셈에 따라 띠장, 버팀보 설치품에 포함된 각종 연결·해체(용접, 볼트조이기) 품 제외

※ 가시설공 : 34,366천원 → 29,749천원(△ 4,617천원)



교통신호수

법규 및 적용기준

-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실제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신호수가 배치되었는지 여부
- 품셈 적용의 적정 여부

11

OO등산로 개선사업(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905백만원(도급액 801 관급 104)
- 규모 : 등산육교(L=38m), 연결데크 등
-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801 | 755 | 46 | 5.74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이윤 산정 오류 조정

- 신기술 사용에 따른 기술료 반영 시 「예정가격 작성요령(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따라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은 기술료를 제외하고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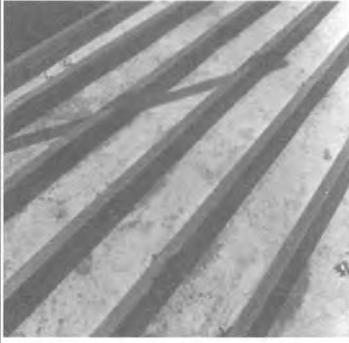
※ 이윤 : 51,060천원 → 42,313천원(△ 8,747천원)

○ 데크 하부구조물 설치품 조정(잡철물제작설치 → 잡철물설치)

- 공중 성격상 유사하고 단가가 적정한 잡철물설치로 적용하되 데크 유형(작업난이도)에 따라 간단·보통·복잡으로 차등 적용

※ 데크공 : 44,205천원 → 24,590천원(△ 19,614천원)

【 유형별 목재데크 】

| 구 분 | 통 기 초 | 독 립 기 초 | |
|------------|--|--|---|
| | | 일 반 형 | 지 주 형 |
| 하부 구조틀 시공중 |  |  |  |
| 시공후 |  |  |  |
| 공종 | 건축공사 조경공 (옥상정원 등) | 조경공사 (산책로 등 일반적인 데크시공시) | 전망데크, 생태공원 탐방로, 수변공원 등 |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표준품셈, 경기도 자체 적산기준

심사 착안 사항

- 원가계산서 경비 산정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공종 성격에 따른 품 적용 적정 여부

12 OO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11,104백만원(도급액 6,104 관급 5,000)
- 규모 : 하수처리장 Q=1,700m³/일, 오수관로 L=1.5km 등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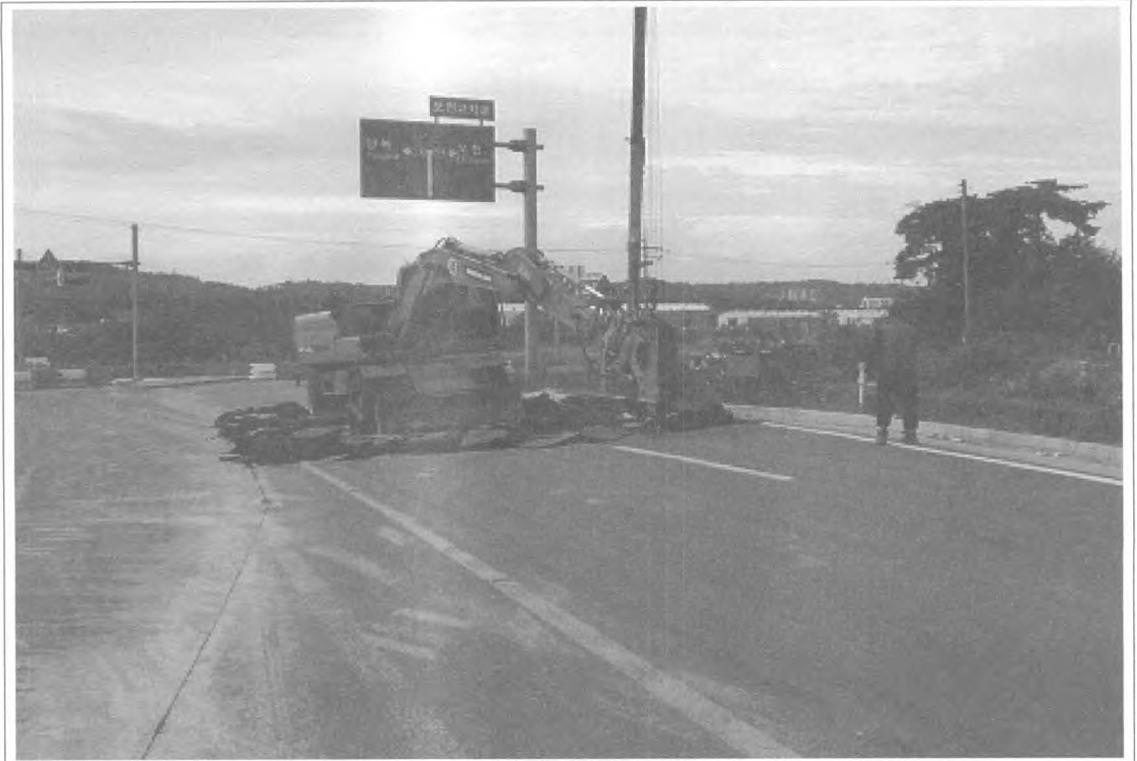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6,104 | 5,685 | 419 | 6.86 |

주요 심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깨기 단가 조정
 - 2014년 표준품셈 개정으로 '기계경비-대형브레이커-작업능력' 에 아스콘 포장깨기가 추가(Q=16m³/hr) 되어,
 - 실적공사비 vs 표준품셈 단가 비교 후 보다 경제적인 단가 적용(실적공사비 22,421원/m³, 표준품셈 4,362원/m³)
 - ※ 아스팔트 포장깨기 : 9,708천원 → 1,889천원(△ 7,820천원)



기존 포장 깨기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심사 착안 사항

- 개정품셈과 실적공사비 비교 확인 후 경제적 단가 적용

13 OO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6,578백만원(도급액 3,768 관급 2,810)
- 규모 : 액비처리시설 80m³/일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768 | 3,448 | 320 | 8.49 |

주요 심사내용

- 유용토 운반 불필요 공정 제외
 - 기존 시설 지하화를 위해 터파기 후 발생하는 유용토를 활용하고자 1km 떨어진 중간적치장에 운반하였다가 다시 반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부지 내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제외
 - ※ 유용토운반 : 5,683천원 → 0천원(△ 5,683천원)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설계에 미반영된 축중기 반영(사토, 순성토 운반량 10,000m³ 이상 건설공사 현장 의무 설치)
 - ※ 축중기 : 0천원 → 497천원



축중기 & 세륜세차시설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심사 착안 사항

- 현장 확인에 따른 불필요 공정 설계 반영 유무
- 대규모 토사 운반이 발생하는 현장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14

OO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8,879백만원(도급액 4,408 관급 4,471)
- 규모 : 총인처리시설 150,000m³/일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4,408 | 4,003 | 405 | 9.19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반영 오류 조정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 등에 반영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외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8,146천원 → 0천원(△ 18,146천원)

○ 가시설공 중복 공정 제외

- 사급자재에 반영하고 가시설공에 중복 계상한 PC강선 및 지압판 제작 공종 제외
 - ※ 가시설공 : 704,608천원 → 537,174천원(△ 167,434천원)



PC강연선 삽입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계약법,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원가계산서 산정 적정 여부
- 내역서, 단가산출서 등 중복 공정 계상 여부

15

00지구 농업생산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토목)

사업개요

- 사 업 비 : 6,396백만원
- 규 모 : 승용마단지 1개소, 축산단지 1개소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6,396 | 5,957 | 439 | 6.86 |

주요 심사내용

○ 추정공사비의 산출내용 조정

- 공사비요율에 의한 설계비 산출 시 추정공사비를 사업부지 내 2개 단지(승용마단지, 축산단지) 각각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반영하였으나, 2개 단지를 합산한 추정공사비로 조정

※ 실시설계비 : 5,388,000천원 → 4,997,000천원(△ 391,000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심사 착안 사항

- 기술용역의 설계비 산출시 추정공사비 및 관련 사항의 적정성 검토

16

OO광장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토목)

사업개요

- 용역비 : 796백만원
- 용역규모 : 광장 정비 A=15,000m²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796 | 750 | 46 | 5.7 |

주요 심사내용

○ 현지 차량운행비 제외

- 현지 차량운행비는 지역 및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해야 하나, 해당 현장은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이 한정되어 있고 현장사무소를 사업구역 내 설치계획이므로 차량운행 불필요

※ 차량운행비 : 10,632천원 → 0천원(△ 10,632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심사 착안 사항

- 불필요한 경비 반영 유무

17

00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토목)

사업개요

- 용역비 : 653백만원
- 규모 : 공공하수처리장 증설(Q=1,000m³/일), 하수관거(L=6.5km)
-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653 | 605 | 48 | 7.37 |

주요 심사내용

○ 계수조정 및 제경비, 기술료 조정

- 기준점 측량 수량 산정 시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를 지형에 맞게 조정 (산지→평지)
- 일위대가와 내역서에 중복 계상된 제경비와 기술료 조정
-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 시 직접인건비는 기술자 인건비만 계상(보통인부 제외)
 - ※ 조사측량 : 53,364천원 → 29,962천원(△ 23,401천원)

○ 지반조사(천공) 제경비 조정

- 표준품셈 천공비에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경비 및 기술료 제외
 - ※ 지반조사 : 26,018천원 → 22,478천원(△ 3,540천원)

○ 인쇄비 조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업무범위에는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대가 불필요

※ 인쇄비 : 16,411천원 → 0천원(△ 16,411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관련 규정 적용 적정 여부

18

OO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토목)

사업개요

- 사업비 : 227백만원
- 규모 :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27 | 216 | 11 | 4.75 |

주요 심사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계획 표준품셈 등 최근 규정 적용

- 개정된 「국토계획 표준품셈(2014년 11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적용된 산출인력 조정
-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2014년 4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2호)」 제5조에 따라 기본설계는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계획 표준품셈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심사 착안 사항

- 최근 규정 적용 여부



2. 건축 분야



1

OO생태관광지원센터 증축공사(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5,047백만원(도급액 4,032, 관급 1,015)
- 규모 : 연면적 2,977.22m², 지상2층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4,032 | 3,528 | 504 | 12 |

주요 심사내용

- 모르타르바름, 콘크리트 면마무리 등 미장공사는 2014년 개정품셈 기준으로 조정
- 면적당규준틀을 평규준틀 및 귀규준틀 기준으로 조정
- 상시출입을 하지 않는 공동구 마감공사(쇠흠손, 면마무리)는 낭비요인으로 물량 조정
- 화강석 붙임(습식) 공종은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으로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현장여건 반영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반영

심사 착안 사항

-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여부 검토 및 상시출입이 없는 공간등에 대하여는 마감공사의 적정성 여부 판단 후 조정

2

OO생태마을 조성사업(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1,399백만원(도급액 1,157, 관급 242)
- 규모 : 체험학교, 연수원리모델링, 글램핑장 조성 등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157 | 765 | 392 | 34 |

주요 심사내용

- 체험학교 캠핑용데크 아연도스틸파이프 수량오류 조정
- 데크하지철물 등 잡철물 금속공사 공정 난이도 조정
- 코너비드설치비는 개정품셈 15-1-2,1 모르타르바름 품에 포함되어 노무비 삭감



글램핑장 및 체험학교 공사부지

법규 및 적용기준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현장여건 반영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반영

심사 착안 사항

- 야산 등 경사지를 활용하여 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 등으로 안전대책이 필요한 공간(○○나루 바베큐장 및 글램핑장 난간 등)에 대하여는 안전 확보토록 재검토 조치
- 데크 하부 아연도스틸파이프 등 수량산출 오류 내역 검토 등

3

OO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5,939백만원(도급액 4,711, 관급 1,228)
- 규모 : 소유자시설, 연면적 3,624.31㎡(지하1/지상3)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4,711 | 4,092 | 620 | 13 |

주요 심사내용

- 가설울타리 및 가설방음벽 중복부위 조정(188m → 48m)
- 보호막 및 낙하물방지망은 환경보전비계상항목으로 조정
- 건축음향공사(견적) 단가는 거래실계가격 기준으로, 노무량은 건설공사 표준 품셈 기준으로 조정
- 코너비드설치비는 개정품셈 15-1-2,1 모르타르바름 품에 포함되어 노무비 삭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법규 및 적용기준

- 201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현장여건 반영
-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반영

심사 착안 사항

- 공사장 주변 주택 및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및 가설울타리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토록하고 중복된 부분은 삭감조정, 보호막 등 환경보전비 계상항목 등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조정 필요
- 전적처리된 음향공사 등에 대하여 거래실계가격 단가적용 및 표준품셈 기준으로 검토하여 공사비 적정성 확보 등

4

OO종합운동장 실내외 개·보수 공사(건축)

사업개요

- 사 업 비 : 1,631백만원(도급액 1,165 관급 466)
- 규 모
 - 종합운동장 실내외 개·보수
 - 웨이트 트레이닝장 증축 326.9㎡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165 | 1,065 | 100 | 8.59 |

주요 심사내용

- 금속공사 공정별 난이도에 따른 노무임 조정
 - 잡철물제작설치 품을 적용한 외벽 하지철물 설치 등 단순 금속공정에 대하여 잡철물설치 품으로 조정
 - 조정내용
 - 잡철물제작설치(간단) → 잡철물설치(복잡)
- 기존 시설 철거공사 건축품셈 적용
 - 철거 노무임을 임의 적용한 화강석 바닥철거 등 기존시설 철거공사에 대하여 건축품셈을 적용하여 노무임 조정
 - 조정내용 : 석공 0.15인/㎡ → 0.072인/㎡
- 자재단가 조정(41종)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물가지에 의한 단가 재조사하여 거래 최고가를 적용한 방부목 등 41종에 대하여 단가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 2014년 표준품셈
- 조달청 자재 가격정보

심사 착안 사항

-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금속공사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작업의 성격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일위대가 적용
- 설계시에 적용된 수개월 지난 자재단가를 월별 조사되는 최신 자재 단가를 적용하여 자재단가의 현실적 적용

5 00버 건조저장시설 설치공사(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2,128백만원(도급액 1,041 관급 1,087)
- 규모
 - 버 건조시설 및 창고 등 4개동, 사일로 설치
 - 철골조 599.99m²
- 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041 | 939 | 102 | 9.79 |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조정
 - (재료비+직노+관급)×비율, (재료비+직노)×비율×1.2 중 낮은 값 적용
- 불필요 공정 조정
 - 판넬공사의 불필요 공정(비계설치) 삭감하고 크레인작업으로 변경
 - 비계설치 공사 → 트럭크레인(감22,965,732원)
- 자재단가 조정(23종)
 - 창호공사 등 임의단가 적용 부분 시중자재단가 및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한 단가 재조사하여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 2014년 표준품셈
- 조달청 자재 가격정보

심사 착안 사항

-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은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방식과 요율을 곱하는 방식중 적은 값을 적용하여 조정
- 판넬공사인 철골조 건축물에는 불필요한 외부 비계설치 공정을 감액하고 판넬 설치를 위한 크레인 공정으로 변경 조정

6

00억 광장 지상구조물 공사(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1,597백만원(도급액 1,504 관급 93)
- 규모
 - 지상구조물(대형쉘터) 3개동 설치
 -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504 | 1,097 | 407 | 27.06 |

주요 심사내용

- 중복 자재수량 조정
 - 자재(슈퍼미러) 수량 산출에서 중복 적용된 할증률 조정
- 철거공사 내역 오류 수정
 - 설계와 상이한 철거공사(경량철골천정틀) 내역서를 해체제 미사용 품으로 적용
 - 특별인부 0.02인/m² → 0.012인/m²
- 자재단가 조정(37종)
 - 견적 설계된 강화접합유리 자재단가를 시중 자재단가 및 타사 견적 재조사 하여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 2014년 표준품셈
- 조달청 자재 가격정보

심사 착안 사항

- 중복 설계되어 있는 자재수량 할증률을 조정하고, 해체재 미사용으로 설계되어 있는 철거공사 노무임을 조정
- 견적 조사되어 있는 자재단가에 대하여 시중 자재단가 및 타사 견적 가격을 비교 조사하여 적정한 자재단가 적용

7

OO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4,630백만원(도급액 3,920 관급 710)
- 규모 : 사회복지시설 4동, 지하1/지상2층, 연면적 2,083m²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920 | 3,286 | 634 | 16.17 |

주요 심사내용

○ 수량 및 공종별 일위대가 조정 등

- 각 층·실별 칸막이 및 내부마감재는 바닥마감높이, 슬래브 하부 보 존재 유무와 층(層)·천장높이를 확인하여 수량 조정
- 각종 비드(조인트, 코너, 걸레받이 등) 설치 노무비는 품셈 15-1-2,1 벽체 모르타르바름 품에 포함되어 삭제
- 모르타르배합, 모르타르바름, 타일 바탕고르기 등 개정품셈 적용

○ 공사방법 조정 등

- 스펠 4M 이하 데크플레이트는 동바리 없이 무지주거푸집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하므로 하부 시스템동바리 적용 삭제
- 지붕 바닥방수 마감조정 : 공기 단축, 시공 간편
 - 비노출우레탄방수 + 보호모르타르 + 누름Conc → 비노출우레탄방수 + 방수층보호재(PE스폰지, 10T) + 누름Conc

- 지붕 벽체(파라펫)방수 마감조정

- 시공성 감안한 도막두께 조정 : 비노출우레탄방수 3mm → 1~2mm
- 설계오류 조정 : 비노출우레탄방수 위 보호모르타르 바름은 시공불가하므로 방수층 보호벽(0.5B 벽돌) 쌓기로 변경

○ 자재단가 조정

- 삼중유리(39mm) 등 거래실례가격 정보지에 조사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현실적인 단가 재조사
- 강설(고철 및 작업부산물)은 최고가로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 2014년 표준품셈
- 조달청 자재 가격정보

심사 착안 사항

- 내부 마감재료 수량 산출은 바닥 마감높이, 슬래브 하부 보의 유무와 층 및 천장 높이 등 요철부분에 대한 정미량으로 조정
- 자재별 주요 특징을 파악하여 장점에 부합되는 설계 적용
- 공사현장 현실성 반영

8

OO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설계변경(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18,805백만원(당초 16,220,백만원, 증 2,585백만원)
- 규모
 - 운동시설(배드민턴장, 수영장 등), 지하1/지상4층, 건축연면적 12,667㎡
 - 게이트볼장 → 어린이감성시설, 배드민턴장 → 다목적체육관 등
- 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585 | 2,153 | 432 | 16.71 |

주요 심사내용

○ 수량 및 공종별 일위대가 조정 등

실내인테리어 임의 대가를 표준품셈 일위대가로 조정

- 체육관 내부 비계매기 조정(증액) : 강관비계매기 → 강관비계매기(벽체용)
+ 강관틀비계(천장용: 6단, 12m)
- 안전발판 일위대가 조정 : 매입단가 → 사용기간 손을 적용

○ 설계오류 조정

- 바탕틀 받침보강철물(앵글 및 고정앵커볼트 : @900*1800)과 바탕틀 각형강관 간격을 통일(@1800*3600) 조정

○ 자재단가 조정

- 라왕리브목 등 특수주문 가공제품 및 고가의 음향자재(동일성능)에 대한 현실적인 단가 재조사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 2014년 표준품셈
- 조달청 자재 가격정보

심사 착안 사항

- 공인되지 않고 기준이 없는 일위대가에 대한 적정 대가 적용
- 거래실례가격 정보지에 조사되지 않은 특수주문 가공제품 및 고가 자재에 대한 현실적인 단가 재조사

9

OO의료시설 증축공사(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4,026백만원 (도급 3,169 관급 857)
- 규모 : 의료시설 지하1층/지상4층, 건축연면적 2,755m² 증축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169 | 2,914 | 255 | 8.05 |

주요 심사내용

- 수량 및 공종별 일위대가 조정 등
 - S.G.P패널설치 등 견적품목 일위대가 조정
 - 재료비 + 노무비(+경비) → 재료비
 - 철근 가공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 현장 가공조립
 - ※ 증축되는 의료시설의 각 층, 각 실이 공동주택과 같이 규격화 건축물이 아니므로 공사현실을 반영함.
- 공사방법 조정
 - 공사용 가설울타리 기둥의 기초콘크리트 타설 삭제
 - 강관동바리 설치높이 4.2m 초과 6m 이하인 경우 : 조립식강관동바리(시스템동바리) → 강관동바리(단 보강)
 - 창틀주위 모르타르충전 → 창틀주위 우레탄폼충전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 2014년 표준품셈
- 조달청 자재 가격정보

심사 착안 사항

- 시공비를 포함한 견적품목은 일위대가(재+노+경) 형식으로 검토하여 1식 대가로 적용
- 건축물 특성 및 공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법 및 대가 적용

10

OO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공사(건축)

사업개요

- 사업비 : 3,919백만원 (도급 3,083 관급 836)
- 규모 : 연구시설 3동, 지하1/지상2층, 건축연면적 2,952㎡
- 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083 | 2,896 | 187 | 6.07 |

주요 심사내용

○ 수량 및 공종별 일위대가 조정 등

- 강재창호 설치 5종 일위대가 조정 : 조달시공단가 → 품셈 16-1-2.1. 강재창호 설치
- 침투성방수 일위대가 조정 : 임의대가 → 품셈 12-8.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준용
- 중밀도섬유판(MDF) 붙임 일위대가 조정 : 품셈 11-5.3. 벽체 합판붙임 → 품셈 18-2-2. 석고판 못붙임

○ 공사방법 조정

-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방습벽 블록보강쌓기(사춤 제1종)는 모르타르 바름을 삭제하고 수성페인트 마감
- 연구사무동 지상1층 바닥 슬래브 하부에는 압출스치로폼을 깔았으므로 침투

성방수 및 보호 모르타르바름 삭제

- 연구사무동의 사무실 용도 바닥마감 변경 : 악세스후로아 + 전도성타일 → 바닥슬래브 내 아울렛박스(전기) + 비닐타일

※ 악세스후로아 삭제로 인한 바닥 마감높이(FL) 변경으로 건축물 높이 조정(-400mm)

법규 및 적용기준

-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 2014년 표준품셈
- 조달청 자재 가격정보

심사 착안 사항

- 시공비를 포함한 견적품목은 일위대가(재+노+경) 형식으로 검토하여 1식 대가로 적용
- 공사방법에 적합한 품셈 적용
- 건축물 특성 및 공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법 및 대가 적용



3. 설비 분야



1

OO거리 경관조성사업(제조구매)

사업개요

- 사업비 : 406백만원(제조 322, 설치 84)
- 규모 : 가로형 간판 95개, 돌출형 간판 78개, 간판철거 320개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합계 | 406 | 385 | 21 | 5.17 |
| 간판제조 | 322 | 310 | 12 | 3.73 |
| 건축(설치) | 84 | 75 | 9 | 10.71 |

주요 심사내용

○ 당초 간판설치공사를 간판제조와 설치공사로 구분적용

※ 간판정비사업의 경우 공장에서 제조 후 현장에서 설치함

[제조]

- 알루미늄채널 노임단가 2014 제조노임단가 적용(증 7,918천원)
- 제조원가 제비율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 기타제조업 적용(감 3,763천원)

[설치]

- 간판철거 벽면 주변의 전기배선 및 지장물정리 대가 추가(증 10,402원/개)
- 앵커볼트 설치(철골공사) → 데크플레이트용 인서트 설치 준용(감 4,618원/개)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간판정비 사업에 따른 간판제조와 설치를 구분하여 적정 노임단가 및 제비율을 적용 검토

2

OO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1,338백만원(도급액 92 관급 1,246)
- 규모 : 협잡물처리기, 탈수기 등 교체
-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92 | 81 | 11 | 11.96 |

주요 심사내용

- 표준품셈적용에 따른 철거 품 조정(기계 8-1 일반기기설치)
 - 협잡물종합처리기, 미세협잡물처리기, 탈수기 등 일반기기의 철거 시 중량에 따라 할증률이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5ton이상으로 일반기기 설치품의 15%를 감한 후 철거 품 적용
 - ※ 일반기기 철거 : 34,295천원 → 29,151천원(감 5,144천원)
- 주요자재 및 고재처리 단가 조정
 - STS강관(65A) 등 18종 및 고재(중량철)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 주요자재 단가조정 : 1,949천원 → 405천원(감 1,544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기계설비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일반기기 설치 및 철거시 설치중량에 따른 할증률을 토대로 심사반영

3

OO공원 정비사업 통신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1,042백만원(도급액 574 관급 468)
- 내용 : 정보통신 설비공사 및 구내설비 등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574 | 513 | 61 | 10.63 |

주요 심사내용

- 장비호환 및 망 구성거리 등을 고려한 케이블 규격변경
 - : 멀티모드(MM) 4C 광 케이블 → 싱글모드(SM) 4C 광케이블
 - SM케이블은 가격이 저렴하고 장거리 고전송에 유리
- 가격정보 및 시장 조사가격 적용(8종)
 - 내외관 일체형 전선관/M : 15,000원 → 13,000원(감 2,000원)
 - 광케이블(SM 4C)/M : 1,450원 → 934원(감 516원)
- 과다 산출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산출물량 변경
 - 당초 깊이 0.9M를 인도설치기준인 0.6M로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4년) 적용

심사 착안 사항

- 설치현장의 특성(공원지역)을 고려한 산출물량 및 자재규격 조정
- 시장자재 거래가격 조사 및 가격정보
- 전기·정보통신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4

OOO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설비)

사업개요

- 사업비 : 1,631백만원
- 내용 :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상황실 구성 등
- 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631 | 1,413 | 218 | 13.37 |

주요 심사내용

- 현장 확인결과 기존 서버 및 S/W중 일부를 재활용하도록 산출 물량 협의조정
 - 저장분배S/W 11대 → 9대, 운영PC 및 S/W 12대 → 8대, 접속라이선서 414copy → 308copy
- 가격정보 및 시장 조사가격 적용(38종)
 - 저장분배 SW/copy : 10,000,000원 → 8,500,000원(감 1,500,000원)
 - 향온향습기(7.5RT)/대 : 15,000,000원 → 11,394,545원(감 3,605,455원)
- 기자재성 구매물품 제경비 제외(22백만원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2014년) 적용

심사 착안 사항

- 시장자재 거래가격 조사 및 가격정보
- 전기·정보통신표준품셈 적용 적정성
- 기 구축장비 현황 및 운영방식 등을 현장 확인하여 산출물량의 적정성 검토 조정

5

DMB 재난 경보방송장비 구매설치

사업개요

- 사업비 : 649백만원
- 구매내용 : 경보방송 자립형 19식, 연동형 11식, 통제대 1식
- 구매시기 : 2014. 12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649 | 518 | 131 | 20.18 |

주요 심사내용

- 과다 산출된 현장장비 설치 수량 조정
 - 현장 확인 결과 기존 강관주에 안전받침대 2조가 기 설치되어 있어, 신규 반영된 안전받침대 2조 삭감
 - ※ 안전받침대 재료비 : 15,000천원 → 7,500천원(감 7,500천원)



〈 광명사거리 강관주 〉

〈 범안사거리 강관주 〉

○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 조정을 통한 공량 조정

- 스피커(혼스피커75W) 노임산출시 노출할증 감액 미 적용

※ 혼스피커 직접 노무비 : 72,682천원 → 9,923천원(감 62,759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물품 설치 시 기설치 여부 등 이중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적용
- 스피커 설치 시 해당규격 및 매입설치·노출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공량 적용

6

00구간 도로확포장 전기공사(설비)

사업개요

- 사업비 : 583백만원(도급액 440, 관급액 등 143)
- 공사내용 : 가로등 신설(62본), 교차로 5개소 신호등 설치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440 | 368 | 72 | 16.36 |

주요 심사내용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관급자재 적용(도급→관급)**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관급자재 적용하여야 하나 물가정보 가격으로 도급자재 적용함
 - 3자단가 가격 적용 및 관급자재로 분리
 - ※ 자재비 : 61,900천원 → 34,106천원(감 27,794천원)
- **위성시보기 및 통신모뎀 품 삭감**
 - 교통신호제어기에 시간 보정을 위한 위성시보기 포함됨에 따라 추가 구매수량 삭감
 - 관제센터와 연동이 없음에도 통신모뎀 및 센터와 종합시험 적용함, 이에 산출된 설치 품 삭감
 - ※ 위성시보기 및 설치 품 당초 4,369천원 → 0천원(△ 4,369천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심사 착안 사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등은 조달청 3단자가 적용 시 자재구입비용이 절감되며, 관급으로 분리 시 제경비 절감됨
- 교통신호제어기는 시간보정 기능이 포함됨에 따라 GPS(시보기) 이중 반영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통신모뎀은 관계센터와 연계 시에만 적용

7

테니스장 조성 전기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493백만원(도급액 126, 관급액 등 367)
- 공사내용 : 조명타워(H 15.2m, 12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26 | 70 | 56 | 44.44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면의 테니스코트 규격이 국제규격과 불일치한 오류를 확인
 - 관련 내선규정에 따라 전선 굵기 축소 및 총연장 단축조정
 - 도면이 실제 치수보다 1.67배 크게 설계됨
 - ※ 테니스코트 규격 : 실제 23.77m×10.97m, 전기도면 39.61m×18.28m
- 전선관 부설 품 조정
 -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량 산출 시 동시배열 할증을 적용하여야 하나 미 적용된 사항을 적합하게 조정
 - ※ 당초 100% → 2열 동시배열 90%, 3열 86.667%, 4열 85%, 6열 70%

법규 및 적용기준

-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 전기 내선규정집

심사 착안 사항

- 설계도면이 실제치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량산출의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시설의 규격 및 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실제 치수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
- 전선관 또는 전력케이블 부설 시 동시배열 할증 및 기타 할증의 가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공량 적용

8

OO배수펌프장 제진기 개선공사

사업개요

- 사업비 : 1,389백만원(도급액 96 관급 1,293)
- 규모 : 자동제진기 6대, 협잡물콘베어 2대 설치, 기존설비 철거
-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96 | 41 | 55 | 57.2 |

주요 심사내용

- 기존 제진기설비 철거 품셈 조정
 - 잡철물제작 품의 50% → 잡철물설치 품의 50%적용
- 철거 제진기설비 고재처리비 조정
 - 적정 제경비 산정을 위해 고재처리비용을 직접재료비에 차감 적용된 사항을 별도계상 (증 5,978천원)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품목의 단가는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 적용
- 가격정보 및 시장 조사가격 적용
 - PIPE(PVC, 100A)/M : 31,400원 → 6,230원(감25,170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4년) 적용

심사 착안 사항

- 공종별 표준품셈 및 공사 현장여건 적정반영 여부 확인
- 관련규정 반영 여부 확인

9

OO유지용수 공급 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847백만원(도급액 422 관급 425)
- 규모 : 유지용수공급시설(21천톤/일) 설치, 배관공사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422 | 343 | 79 | 18.7 |

주요 심사내용

○ 하수처리장 이송배관 설치 품셈 조정

- 일반배관 설치 품셈을 적용한 하수처리장 재활용수 이송배관(800A) 설치 품셈을 플랜트 배관 품셈 적용
- 플랜트 배관공사의 경우 배관설치 품셈에 용접 품이 포함되어 이중 계상된 용접 품 삭감

○ 가격정보 및 시장 조사가격 적용

- 플렉스블조인트(250A)/EA : 480,000원 → 371,000원(감109,000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4년) 적용

심사 착안 사항

- 공종별 표준품셈 및 공사 현장여건 적정반영 여부 확인
- 관련규정 반영 여부 확인

10

OO액비처리시설 개선사업

사업개요

- 사업비 : 2,643백만원(도급액 649 관급 1,994)
- 규모 : 액비처리시설(80톤/일) 설치, 탈취시설 및 배관공사
-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649 | 565 | 84 | 12.9 |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따른 표준품셈 적용

- 플랜트 배관재질이 합금강인 경우 용접식은 용접공 적용하고, 나사식은 배관 공량에 배관구경 별로 할증률 적용 가산
- 일반기기 철거 품을 적용한 펌프 등 기자재 철거 품을 해당 기자재 별로 구분하여 표준품셈 적용
- 현장 확인결과에 따라 감속기 철거 수량 조정 및 이설 품을 설치 품으로 조정

○ 가격정보 및 시장 조사가격 적용

- 체크밸브(150A)/대 : 533,140원 → 453,100원(감80,040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건설공사 표준품셈(2014년) 적용

심사 착안 사항

- 공종별 표준품셈 및 공사 현장여건 적정반영 여부 확인
- 관련규정 반영 여부 확인



4. 용역(일반·학술) 분야

Handwritten text in the bottom left corner,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The text is illegible due to blurring and fading.

1

0000지구(1공구) 페아스콘 처리(용역)

사업개요

- 사업비 : 2,338백만원
- 규모 : 페아스콘 76,726톤
- 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338 | 1,867 | 471 | 20.15 |

주요 심사내용

- 페아스콘 처리단가 “2014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적용
 - 페아스콘(76,726톤) : 19,819원/톤 → 14,233원/톤



〈현장사진〉



〈철거대상〉 도로 - 페아스콘 발생

법규 및 적용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 2014년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비 심사기준(내부방침)

심사 착안 사항

- 처리비가 한국건설자원협회 고시단가, 견적가격으로 된 것을 2014년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비 심사기준 적용
- 폐기물의 물량 및 종류 검토
 - 토목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산출량과 비교 검토
 - 성상별로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임의적 일괄 계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기물의 종류 검토
- 폐기물 상차비의 경우 토목 등의 공사설계와 폐기물 처리용역간의 중복 반영 여부 확인
 - 상차비는 대부분 토목 등의 공사설계에 반영

2

OOO폐기물처리(용역)

사업개요

- 용역비 : 703백만원
- 용역내용 : 건설폐재류 8,280톤, 폐콘크리트 4,761톤,
건설오니 28톤, 가연성(소각폐기물) 1,515톤
-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703 | 686 | 17 | 2.42 |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 중기사용료중 재료비 계산 오류 수정
- 처리비 :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와 시장가격 조사결과 등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 ※ 폐기물(소각) : 시장가격 조사결과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2014년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비 심사기준(내부방침)

심사 착안 사항

- 운반비 : 건설표준품셈과 원가계산준칙에 의하여 산정 여부
- 처리비 : 관련 적용기준 적용 여부 및 폐기물(소각) 처리단가는 견적 의뢰하여 조정

3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용역)

용역개요

- 용역비 : 2,700백만원
- 내용 :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협잡물 등을 최종처분 장소까지 수집운반, 위탁처리 계약
 - 총처리량 : 수집운반 : 23,920톤 / 처리 : 11,529톤
- 기간 : 계약일 ~ 2014.12.31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계 | | 2,700 | 2,634 | 66 | 2.44 |
| 수집운반 (하수슬러지) | | 590 | 551 | 39 | 6.61 |
| 운반처리 민간위탁 | 하수슬러지 | 1,835 | 1,811 | 24 | 1.31 |
| | 협잡물 | 275 | 272 | 3 | 1.09 |

주요 심사내용

- 운반비 산출에 반영된 경유단가 조정
 - 월별 공사 기초유류단가 적용 재산정(물가정보 단가)
- 용역원가내역서 간접노무비 비율 평균치 적용
 - 일반용역에 계상하지 않는 간접노무비를 토목공사 원가계산제비율에 의거 평균치 적용
- 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 조정
 - 일반관리비(용역) : 6% → 5%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조달청 고시)

심사 착안 사항

- 경유단가 산정시 월별 공사 기초유류단가중 적정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적용 검토
- 간접노무비율 적용시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에 의한 평균치를 적용하여 사업기준의 적정성 적용 검토

4

00~00간 문화재발굴조사(용역)

사업개요

- 용역비 : 234백만원
- 용역내용 : 정밀발굴조사 4,700m²
- 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34 | 231 | 3 | 1.28 |

주요 심사내용

- 현장인부임 4대 보험료 산식오류 정정
- 토사원가 적용계수 및 연료(경유) 단가, 노임단가 조정
 - 버킷계수(K) : 0.55 → 0.7
 - 1회 싸이클시간(Cm) : 20초, 각도 180° → 18초, 각도 135°
 - 조사가격에 따른 연료(경유)단가
 - 중기운전기사 최근 노임단가
- 물가정보지 “인쇄용지” 조사가격 반영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심사 착안 사항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에 의한 조사인력 인건비 단가 및 참여일수를 계상하여 적정인원 산정
- 현장출장을 통한 현장조사후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적용

5

OO산성 발굴조사(용역)

사업개요

- 사 업 비 : 481백만원
- 규 모 : 조사면적 6,900m²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481 | 470 | 11 | 2.29 |

주요 심사내용

- 중기(굴삭기) 및 현장운영차량 연료 단가 조정
 - 중기(굴삭기) 및 현장차량 연료(경유) 단가
: 1,610.2원/ℓ → 1,542.7원/ℓ (※ 조사가격 반영)
- 보고서 간행비 조정
 - 조달청 원가계산 적용(옵셋인쇄, CTP 출력방식, 이윤 산식오류 정정)

법규 및 적용기준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심사 착안 사항

- 유류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단가에 반영

6

OOO청사관리(용역)

사업개요

- 용역비 : 2,351백만원
- 용역내용 : 건물 15동, 토지 16필지 유지관리 등
-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351 | 2,306 | 45 | 1.91 |

주요 심사내용

- 연차수당 계산오류 수정
 - 일급×15일분×1.5 → 일급×15일분
- 건강 및 고용보험료 요율 조정
 - 건강보험료 : 2.945% → 2.995%
 - 고용보험료 : 0.8% → 0.9%

법규 및 적용기준

- 근로기준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제조부분 직종별 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심사 착안 사항

- 기본급, 각종수당 등 적용시 관련규정 등에 의거 적정 산출 여부
- 원가계산서 비목별 내용, 수식 상호 오류 검토
- 기타 원가계산 기준에 의거 적정 산출 여부 등

7

비전과 전략수립(용역)

사업개요

- 사업비 : 200백만원
- 규모 : 정책 비전 도출 및 주요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00 | 181 | 19 | 9.5 |

주요 심사내용

- 「국내여비」에서 책임연구원 등 과업수행의 역할에 따라 출장 일수·횟수 산출 조정
 - 책임연구원* : (48일) → (1일×12월 = 12일) 로 조정
 - *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면서 결론도출을 수행하는 역할
- 「국외여비」 감액
 - 해외사례는 타 연구사례 등으로 활용 가능하고, 특히 본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사례에 대한 전문지식 축적은 용역사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판단됨
- 「유인물비」 원가계산 방식 적용 조정
 - (단가×부수) → (조달청 경인쇄 원가계산) 방식으로 조정

○ 「전산처리비」 및 「연구재료비」 감액

- 일반관리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비 감액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 2014년 경기도 학술연구용역 심사기준(내부방침)

심사 착안 사항

- 참여 연구원의 자격기준을 격상하거나 과업 참여율 과다 산정 여부
 - 책임연구원 1인 원칙
 - 참여인원과 타 용역의 중첩도를 고려하여 책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의 참여율 50~80%로 조정
- 국내여비(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및 해외경비 계상하는 경우
 - 관외여비만 인정하고, 관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용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전산처리비는 제외함

1

수난구조장비(물품)

사업개요

- 사 업 비 : 249백만원
- 내 용 : 고속형콤비보트 등 3종 구매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249 | 171 | 78 | 31.3 |

주요 심사내용

-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조정
 - 고속형콤비보트(선외기+트레일러) : 110백만원 → 32백만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심사 착안 사항

- 수요규격에 따른 시장조사 결과 업체별 고속형콤비보트 심한 가격 편차가 발생되어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온라인업체 포함) 거래실례가격 확인
- 발주부서 담당자 사전협의 후 수요규격에 적합하므로 가격조정

2

X-RAY 보안검색장비(물품)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5백만원
- 내 용 : X-RAY 발생기 등 보안검색장비 SET 구매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35 | 124 | 11 | 8.15 |

주요 심사내용

- 규격 등 조정으로 납품 가능 업체수 확대에 따른 가격조정
 - X-RAY 보안검색장비 : 135백만원 → 124백만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심사 착안 사항

- 해당물품 취급업체가 소수인 관계로 최근 3년간 유사물품 나라장터 입찰기록 확인후 관련업체 시장조사
- 발주부서 담당자와 계약심사 요청시 제시된 규격 및 조건(납품기한 등) 조정으로 납품 가능 업체수 확대에 따른 가격조정 가능

3 00클라우드시스템 구축(전산)

사업개요

- 사업비 : 200백만원(심사제외 : PG개발 166백만원)
- 내용 : 프로그램 개발, H/W(서버, 부대장비), S/W(WAS, 리포팅툴 등)
구입
-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4 | 31.3 | 2.7 | 7.95 |

주요 심사내용

- 시중 실거래가격 조사에 근거하여 장비 단가 조정
 - 서버(WEB, WAS용) : 4,000,000원 → 3,500,000원 (감 500,000원)
 - UPS : 1,200,000원 → 0 (감 1,200,000원)
 - KVM스위치 : 2,000,000원 → 1,300,000원 (감 700,000원)
 - 랙(서버용) : 1,000,000원 → 950,000원 (감 50,000원)

※ 「PG개발비」는 경기도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4조 2항에 의거 심사 제외

법규 및 적용기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심사 착안 사항

- 발주기관의 정보통신 시설 및 구성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물품(장비)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확인
- 설계내역서와 과업지시서에 누락, 중복 자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규격이 기관의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지 확인
 - 「UPS」는 설계내역에 계상되어 있으나 과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규격은 발주기관의 인프라 여건에 부적합 조정

4

OO시스템 통합유지보수(전산)

사업개요

- 사 업 비 : 2,701백만원(심사제외 : H/W 1,549, 상용S/W 672, M/M방식 인건비 94백만원)
- 내 용 : 전산, 통신시스템·장비 및 S/W유지보수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86 | 269 | 116 | 30 |

주요 심사내용

-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근거 기능수 및 기능점수 조정
 - 긴급구조 및 상황관리 : 기능수(280 → 232개), S/W규모(1,419 → 1,067FP)
 - ⇒ 개발S/W 유지보수비 : 158,032,000원 → 114,956,000원(감 43,076,000원)
 - 위험지도 및 문서작업 : 기능수(258→ 181개), S/W규모(1,358→ 796FP)
 - ⇒ 개발S/W 유지보수비 : 137,833,000원 → 65,109,000원(감 72,724,000원)

법규 및 적용기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심사 착안 사항

- 지난년도 과업과 당해연도 H/W, S/W 과업의 규모 및 신·구장비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 지 확인
- 설계서가 전년도 심사요청 설계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근거하여 중복, 과다, 잘못 산정된 기능수가 없는 지 확인

5

OO기금연계관리시스템 구축(전산)

사업개요

- 사업비 : 396백만원
- 내용 : H/W, S/W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396 | 351 | 45 | 11.3 |

주요 심사내용

-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근거 기능수 및 기능점수 조정
 - 프로그램 개발 : 기능수(130 → 120개), S/W규모(631 → 567FP)
- 시중 거래실례가격 조사에 근거하여 물품 단가 조정

법규 및 적용기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심사 착안 사항

- 단위업무프로세스별 기능의 적정 산정 여부 및 중복 단위프로세스 여부 확인
- 내부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 업무연관성을 확인하고 중복 또는 잘못 산정된 기능이 없는지 확인

1

자체 적산기준 마련을 통한 예산 절감(용인시)

사업개요

- 사업명 : 2014년 주요도로 차선 도색공사
- 요청기관 : 용인시(교통정책과)
- 개요
 - 심사구분 : 공사
 - 위치 : 국도42호선 등 관내 주요도로 12개 구간
 - 기간 : 2014. 6. ~ 2014. 9.
 - 규모 : 노면표시(차선, 횡단보도, 기호 등) 55,054m²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심사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125 | 752 | 373 | 33.16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시행(2014. 1. 1.)
 -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상향

(단위 : mcd/m² · lx)

| 구분 | 개선 전 | | | 개선 후 | | |
|----------|--------------|--------------|----|------|-----|----|
| | 백색 | 황색 | 청색 | 백색 | 황색 | 청색 |
| 시공초기(기준) | 130 | 90 | 6 | 240 | 150 | 80 |
| 재도색시(권장) | 시내50 외곽80 | 시내30 외곽50 | 2 | 100 | 70 | 40 |
| 우천(습윤)시 | 기준 없음 | | | 100 | 70 | 40 |

- 차선도색 도료는 “KS규격(KSM 6080)” 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 원칙만 기준으로 제시하고, 상향된 반사성능을 만족하는 도료의 등급 선정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 차선도색이 포함된 공사별 도료 등급 적용방식이 상이하고 도료 등급별 (R0~R5) 단가 차이가 커 예산 낭비 요인 발생

〈용착식 도료의 등급별 단가〉

(단위 : mcd/m² · lx)

| 구 분 | 등급 | 자재단가(조달청) | 재귀반사도 성능 |
|-----|----|-----------|----------|
| 백 색 | R0 | - | 규정 없음 |
| | R3 | 1,235원/kg | RL≥150 |
| | R4 | 1,936원/kg | RL≥200 |
| | R5 | 2,496원/kg | RL≥300 |
| 황 색 | R0 | - | 규정 없음 |
| | R3 | 1,375원/kg | RL≥150 |
| | R4 | 3,300원/kg | RL≥200 |

개선사항 및 효과

- 노면표시공사 완료구간의 반사성능 측정 결과(도로교통공단)를 활용하여 자체 적산기준 마련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 도료 등급(R3~R4)과 유리알(일반, 고회도)을 조합하여 시공 후 반사성능을 측정한 결과 “도료 R3등급 이상” 과 “고회도 유리알” 을 조합하여 시공할 경우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됨

〈 도로교통공단 반사성능 측정결과 〉

(단위 : mcd/m² · lx)

| 구분 (측정일자) | 색상 | 적용규격 | 측점수 | 평균 측정값 | 적합 측점비율 | 적합 여부 |
|----------------------|----|--------|-----|-----------|------------|----------|
| A공사 (2014.04.10.) | 백색 | R3+고휘도 | 20 | 408 | 100% | 적합 |
| | 황색 | R3+고휘도 | 20 | 198 | 90% | 적합 |
| B공사 (2014.04.30.) | 백색 | R3+고휘도 | 20 | 336 | 90% | 적합 |
| | 황색 | R3+고휘도 | 20 | 206 | 90% | 적합 |
| C공사 (2014.06.05.) | 백색 | R3+고휘도 | 40 | 414 | 100% | 적합 |
| | 황색 | R3+고휘도 | 20 | 253 | 95% | 적합 |

※ 적합기준 : 측점수의 90% 이상이 반사성능 기준치 이상일 것

2 도로 동상방지층 생략으로 예산절감(평택시)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법개선 -

사업개요

- 사업명 : 학현1리-덕우1리 시도3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소
- 요청기관 :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등 7개소
- 개요
 - 심사구분 : 도로공사
 - 위치 :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산 34-15번지 일원등 7개소
 - 기간 : 2014. 01. 01 ~ 2014. 11. 25.
 - 규모 : 도로개설 등 7개소
- 도입배경 : 기후온난화에 따라 동상의 피해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도로 동상방지층 설치에 따른 예산 절감 필요성 대두

심사결과

- 요청액 : 4,708백만원
- 심사액 : 3,804백만원
- 조정액 : 904백만원 중 380백만원 감액 효과
- 조정율 : 19.20 %

현황 및 개선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 80cm | | 5cm 표층 | 40cm | | 5cm 표층 |
| | | 10cm 기층 | | | 10cm 기층 |
| | | 20cm~30cm 보조기층 | | | 30cm 보조기층 |
| | | 30cm~50cm 동상방지층 | | | 토사 성토부분 |

○ 포장단면상 표층 5cm + 기층 10cm + 보조기층(20~30cm) + 동상방지층(30~50cm)로 포장, 동상방지층의 두께는 약 80cm인 실정임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 8 국토해양부)에 의거 우리시 평균 설계동결심도가 40~45cm로 계산하면 동상방지층 불필요함으로 생략

기대 효과

○ 폭10m 도로에 1Km 공사시 약 60백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

※ 동상방지층 적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건 명 | 의뢰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조정 사유 |
|--------------------------------|-------|-------|-----|-------|--------------------------|
| 계 | 4,708 | 3,803 | 905 | 19.2% | |
| 학현1리-덕우1리 시도3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 1,935 | 1,676 | 259 | 13.39 | 동상방지층지침반영 (149 백만원)감액 |
| 현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407 | 368 | 39 | 9.65 | 동상방지층지침반영 (26백만원) 감액 |
| 기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526 | 480 | 46 | 8.64 | 동상방지층지침반영 (29백만원)감액 |
| 고령1리-삼계2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 657 | 397 | 260 | 39.61 | 동상방지층지침반영 (112백만원)감액 |
| 삼계1리-고잔리도로 확포장공사 | 772 | 538 | 234 | 30.27 | 동상방지층지침반영 (41백만원)감액 |
| 오리곡 취락지구도로 개설공사 | 258 | 224 | 34 | 14.05 | 동상방지층지침반영 (12백만원)감액 |
| 미군기지(k-6) 워킹게이트앞 도로확포장공사 | 153 | 120 | 33 | 21.83 | 동상방지층지침반영 (11백만원)감액 |

3 과다 적용된 용역비 현실화 조정(안성시)

사업개요

- 사업명 :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용역
- 요청기관 : 안성시(건설과)
- 개요
 - 심사구분 : 용역
 - 위치 : 안성시 일원
 - 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 규모 :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5개소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

| 심사요청액 | 심사액 | 조정액 | 조정률 |
|-------|-----|-----|-------|
| 114 | 100 | 14 | 12.3%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 1일 100톤 이상 지하수개발 및 이용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5년마다 동 인허가를 갱신하여야 함. (동 인허가는 관, 민이 동일 적용함)
- 지하수 사후관리용역은 사후관리(청소, 검사, 정비) 및 지하수 영향조사로 구분되어 청소, 검사, 정비는 실비지급하며,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영향조사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 적용하였음.
-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는 “지하수영향조사 대가기준”을 적용시에 많은 용역비(건당 일천만원이상)가 산출됨.

개선사항 및 효과

- 관련업체 등에 거래실례가격 조사결과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용역실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동일 건에 대해서 일반인(민간)은 거래실례가격(3~4백만원)을 적용하여 용역을 실행하고 있음을 파악함.
-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토대로 “지하수영향조사 대가기준” 의 40%선에서 용역비 산출 적용함.
-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은 일반인이 발주한 용역 수행이나, 관공서에서 발주한 용역 수행이 차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실례가격에 적합한 용역비를 적용하여 발주함으로써 예산절감함.
 - ※ 지하수영향조사 대가기준에 대하여 현실화가 필요함.(하향조정)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일 100톤이상 지하수는 총 300여공으로 5년마다 지하수영향조사로 대가기준으로 산출시 약 30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소요됨.
- 본 용역의 용역비 현실화로 인해 5년마다 약 18억원이상, 매년 약 3억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2014. 8. 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7.>

1. “계약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 본청 실·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 의회사무처
 - 라. 도의 지방공기업
 - 마. 도의 출연기관(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 제외) [전문개정 2014.8.7.]
 - 바. 시·군(지방공기업 및 50퍼센트 이상 출연기관 포함) [전문개정 2014.8.7.]
4. 삭제 <2014.8.7.>
5. 삭제 <2014.8.7.>
6. 삭제 <2014.8.7.>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의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

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 [전문개정 2014.8.7.]

- ② 제1항의 경우 시·군의 대상사업은 국비·도비 보조사업에 한한다. 다만, 시·군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7.>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4.8.7.]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무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4.8.7.]
-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14.8.7.]
- 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8.7.]
- 5.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
-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2.18.]

제5조(심사요청)

-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8.>

제7조(심사결과)

-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2014.8.7.>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08.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별지별표)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 | | | |
|---|---|---|--|
| 공 사 명 | | 요 청 기 관 | |
| 공 사 위 치 | | | |
| 공 사 기 간 | | 계 약 방 법 | |
| 공 사 금 액 | · 총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 |
| 재 원 구 성 | · 국비 : 천원(%), 도비 : 천원(%), 시·군비 : 천원(%), 기타 : 천원(%) | | |
| 설 계 자 |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 발 주 처 | · 담 당 자 : | (전화번호 :) | |
| ○ 공사개요 : | | | |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 | | |

(2-2)

물품구매 산출기초 조사서

○ 건 명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산 출 조 사 근 거 | | | | 산출가격(원) | |
|------|-----|-----|-----|-------------|--|--|--|---------|----|
| | | | | | | | | 단 가 | 금액 |
| | | | | | | | | | |
| 공급가액 | | | | | | | | | |
| 부가세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2-2)

제조원가 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 비 목 | 구 분 | 단위 | 산 출 금 액 | | | 구성비 | 비 고 |
|------------------|-------------|-------------|---------|-----|-----|-----|-----|
| | |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
| 제 조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 작업설·부산물등(△) | | | | | |
| | | 소 계 | | |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 | | |
| | | 소 계 | | | | | |
| | 경 비 | 전 력 비 | | | | | |
| | | 수 도 광 열 비 | | | | | |
| | | 운 반 비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수 리 수 선 비 | | | | | |
| | | 특 허 권 사 용 료 | | | | | |
| | | 기 술 료 | | | | | |
| | | 연 구 개 발 비 | | | | | |
| | | 시 험 검 사 료 | | | | | |
| | | 지 급 임 차 료 | | | | | |
| | | 보 험 료 | | | | | |
| | | 복 리 후 생 비 | | | | | |
| | | 보 관 비 | | | | | |
| | | 외 주 가 공 비 | | | | | |
| | | 안 전 관 리 비 | | | | | |
| | | 소 모 품 비 | | | | | |
| | | 여비·교통비·통신비 | | | | | |
| | | 세 금 과 공 과 금 | | | |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 |
| | | 도 서 인 쇄 비 | | | | | |
| | 지 급 수 수 료 | | | | | | |
| | 기 타 법 정 경 비 | | | | | | |
| | | 소 계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 | | |
| 이 윤 () % | | | | | | | |
| 총 원 가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 | | |
| 총 계 | | | | | | | |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2-2)

인쇄물(편집·기획) 산출기초 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

(단위 : 원)

| 구 분 | 산출금액 | 산출근거 | 비 고 |
|----------------------|------|------|---------------|
| 용 지 대 | | | |
|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 | | |
| 필 름 출 력 비 | | | |
| 인 쇄 판 비 | | | |
| 인 쇄 비 | | | |
| 제 본 비 | | | |
| 기 획 료 또 는 디 자 인 비 | | | 인쇄물 기획·편집시 작성 |
| 기 타 | | | |
| 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소 계 | | | |
| 이 윤 | | | |
| 합 계 | | | |
| 공 급 가 액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 총 계 | | | |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 적용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2. 계약심사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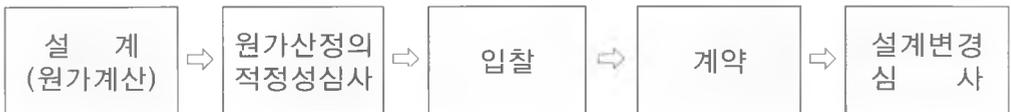
2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 심사내용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
| 원가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 설계변경 심사 |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 심사내용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
| 원가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
| 설계변경 심사 |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 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

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 의 “1)·4)” 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 의 “4)” 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 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 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6) 그 밖의 공사는 위 “1)” 부터 “5)” 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 의 그 밖의 공사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 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 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 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 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밖의 보조자료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밖의 계약이행

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

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

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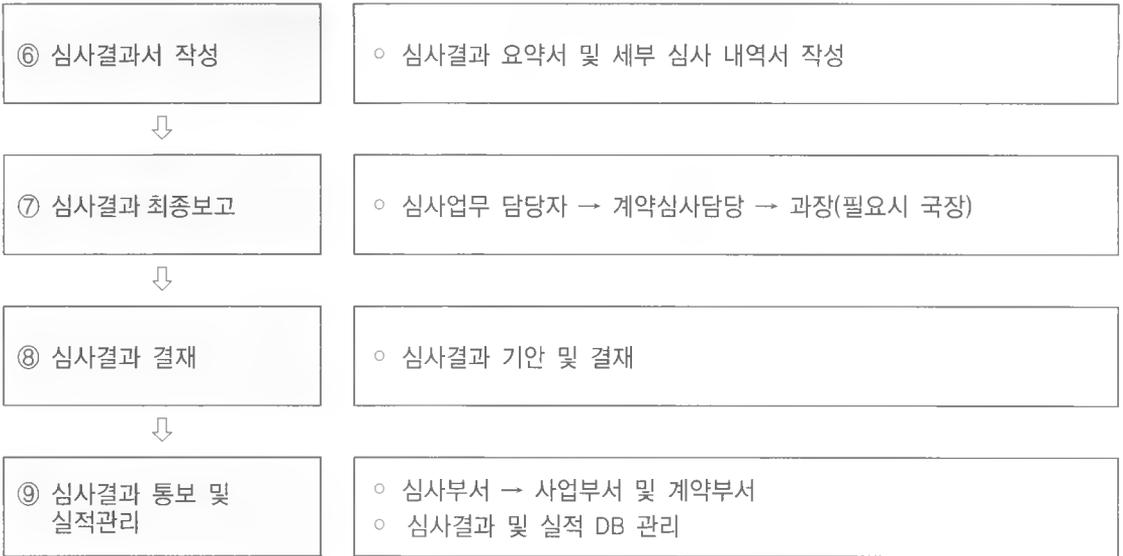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 구 분 | 검토 사항 |
|-------------------------------------|---|
|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
|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
|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
|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
|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 원안 통과 | 수 정 | 재검토 |
|-------------------------|----------------------|-----------------------------|
|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재검토 사유명기) |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횡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절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

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 | | | | | | | |
|------|---------|-----|--|--|--|--|----|
| 시행 | 0000과 - | 담당자 | | | | | 결재 |
| 시행일자 | | | | | | | |
| 수신자 | | 협조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접수일자 | | | | | | | |

| | | | |
|---|---|--|--|
| 공사명 | | 요청기관 | |
| 공사위치 | | | |
| 공사기간 | | 계약방법 | |
|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
| 설계자 | ·상 호 : ·책임기술자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 발주처 | ·담당자 : | (전화번호 :) | |
| ○ 공사개요 : | | | |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발신명의 | |
|------|--|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 구 분 | | 요청내용 | 심사내용 | 증 감 | 비 고 |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작 업 부 산 물 | | | | |
| | | 소 계 | |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 | |
| | | 소 계 | | | | |
| | 제 경 비 | 운 반 비 | | | | |
| | | 기 계 경 비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 | |
| | | 고 용 보 험 료 | | | | |
| | | 건 강 보 험 료 | | | | |
| | | 연 금 보 험 료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 | | | | |
| | | 안 전 관 리 비 | | | | |
| | | 기 타 경 비 | | | | |
| | | 환 경 보 전 비 | | | | |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 |
| | | 하도급발급수수료 | | | | |
| 소 계 | | | | | | |
| 계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
| 이 운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 | |
| [도 급 액] | | | | | | |
| 관 급 자 재 비 | | | | | | |
| 이 설 비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사명 :

□ 사업개요

| | |
|------|--|
| 위 치 | |
| 공사개요 | |
| 공사기간 |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중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중)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 구분 | | 요청내용 | 심사내용 | 증감 | 비고 | |
|-----------------------|-------|-----------|------|----|--------|--|
| | | | | | 요청(심사)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 | | |
| | | 간접재료비 | | | | |
| | | 소계 | | | |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 | | |
| | | 간접노무비 | | | | |
| | | 소계 | | | | |
| | 경비 | 경비 | | | | |
| | | 여비 | | | | |
| | | 유인물비 | | | | |
| | | 전산처리비 | | | | |
| | | 시약·연구용재료비 | | | | |
| | | 회의비 | | | | |
| | | 임차료 | | | | |
| | | 교통통신비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연금 및 보험료 | | | | |
| | | 기타 경비 | | | | |
| | | 소계 | | | | |
| | | 계 | | | | |
| | 일반관리비 | | | | | |
| 이윤 | | | | | | |
| [총원가]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총용역비] | | | | | | |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역명 :
 사업개요

| | |
|------|---|
| 위 치 | |
| 용역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 |
| 용역기간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 | |
|-------|----------|
| 시 행 | 0000과 -- |
| 시행일자 | . . . |
| 수 신 자 | |
| 접 수 | |
| 접수일자 | . . . |

| | | | | |
|-----|-----|-----|--|--------|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 결 재 |
| | | | | |
| 협 조 | | | | |

| | | | |
|--|--------------------------------|-------|--|
| 건 명 | | 요청기관 | |
| 산출금액 | | | |
| 구 매 예 정 일 자 | | | |
| 계약방법 | | | |
|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
| 기 타 | | | |
|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발신명의 |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산 출 조 사 근 거 | | | | 산 출 가 격 (원) | |
|-------|-----|-----|-----|-------------|--|--|--|---------------|-----|
| | | | | | | |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공급가액 | | | | | | | | | |
| 부 가 세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 | |
|-------|---------|
| 시 행 | 0000과 - |
| 시행일자 | |
| 수 신 자 | |
| 접 수 | |
| 접수일자 | |

| | | | | |
|-----|--|--|--|--------|
| 담당자 | | | | 결 재 |
| 협 조 | | | | |

| | | | |
|---|--------------------------------|-------|--|
| 건 명 | | 요청기관 | |
| 산출금액 | 원 | | |
|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 | | |
| 계약방법 | | | |
|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
| 기 타 | | | |
|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발신명의 | |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 비 목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작업설·부산물등(△) | | | | |
| | 소 계 |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 | |
| | 소 계 | | | | |
| 제 조 원 가 | 경 비 | 전 력 비 | | | |
| | | 수 도 광 열 비 | | | |
| | | 운 반 비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수 리 수 선 비 | | | |
| | | 특 허 권 사 용 료 비 | | | |
| | | 기 술 료 비 | | | |
| | | 연 구 개 발 비 | | | |
| | | 시 험 검 사 료 비 | | | |
| | | 지 급 임 차 료 비 | | | |
| | | 보 험 료 비 | | | |
| | | 보 리 후 생 비 | | | |
| | | 보 외 주 가 공 비 | | | |
| | | 안 전 관 리 비 | | | |
| | | 소 모 품 비 | | | |
| | | 여비·교통비·통신비 | | | |
| | | 세 금 과 공 과 금 비 | | |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
| | | 도 서 인 쇄 비 | | | |
| | | 지 급 수 수 료 비 | | | |
| 그 밖의 법정 경비 | | | | | |
| | 소 계 | | | | |
| 일반 관리비 ()% | | | | | |
| 이 운 ()% | | | | | |
| 총 원 가 | | | | | |
| 부 가 치 세 | | | | | |
| 총 계 | | | | | |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 | |
|-------|---------|
| 시 행 | 0000과 - |
| 시행일자 | |
| 수 신 자 | |
| 접 수 | |
| 접수일자 | |

| | | | | |
|-----|--|--|--|----|
| 담당자 | | | | 결재 |
| | | | | |
| 협 조 | | | | |

| | | | | | |
|--|---|-------|---------|------|--|
| 요 청 기 관 | | 담 당 자 | | 전화번호 | |
| 건 명 | | | | | |
| 산 출 금 액 | | 원 | 계 약 방 법 | | |
| 수의계약시 계약 대상 업 체 |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 | | | |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발신명의 |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 구 분 | 산출금액 | 산출근거 | 비 고 |
|--------------------|------|------|-----|
| 용 지 대 | | | |
|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 | | |
| 필름출력비 | | | |
| 인 쇄 판 비 | | | |
| 인 쇄 비 | | | |
| 제 본 비 | | | |
| 기 타 | | | |
| 계 | | | |
| 일반관리비 | | | |
| 소 계 | | | |
| 이 윤 | | | |
| 합 계 | | | |
| 공 급 가 액 | | | |
| 부가가치세 | | | |
| 총 계 | | | |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 | |
|-------|---------|
| 시 행 | 0000과 - |
| 시행일자 | |
| 수 신 자 | |
| 접 수 | |
| 접수일자 | |

| | | | | |
|-----|--|--|--|--------|
| 담당자 | | | | 결 재 |
| | | | | |
| 협 조 | | | | |

| | | | | | |
|--|---|-----|------|------|--|
| 요청기관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 진 명 | | | | | |
| 산출금액 | | 원 | 계약방법 | | |
|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 | | | |
|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 | | |

발신명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 구 분 | 산출금액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기 획 료 또 는 디 자 인 비 | | | |
|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 | |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
| 필 림 출 력 비 | | |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
| 그 밖 의 비 용 | | | |
| 계 | | | |
| 일반관리(5%이내) | | | |
| 소 계 | | | |
| 이 윤(10%이내) | | | |
| 합 계 | | | |
| 공 급 가 액 | | | |
| 부가가치세(10%) | | | |
| 총 계 | | | |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건 명 :

개 요

| | |
|---------------|--|
| 품 명 | |
| 구매내역 및 금 액 | |
| 계약방법 |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륜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 | |
|-------|---------|
| 시 행 | 0000과 - |
| 시행일자 | . . . |
| 수 신 자 | |
| 접 수 | |
| 접수일자 | . . . |

| | | | | |
|-----|-----|-----|--|--------|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 결 재 |
| | | | | |
| 협 조 | | | | |

| | | | |
|--------------------------|-----------------|------------------|--|
| 공 사 명 | | 요청기관 | |
| 공 사 위 치 | | | |
| 공 사 기 간 | | | |
| 계약금액(최초) | | | |
| 공 사 개 요 | | | |
| 설 계 자 | 상호 : 책임기술자 : | 대표자 : (전화 :) | |
| 발 주 자 | 담당자 : | (전화 :) |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 |
| ◦ 첨부 서류 - | | | |

발신명의

2014 계약심사 사례집

제 작 :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

발행일 : 2015. 2.

문 의 : ☎ 031-8008-2902

인 쇄 : 경인인쇄사
